

# 수입대행 계약서

계약체결일 : 2000년 월 일

(주)○○스틸(이하 “갑”이라 칭함)과 (주)○○(이하 “을”이라 칭함)은 “갑”的 요청에 의거 “을”이 수입대행하는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.

## 제 1 조(수입대행 물품 및 수량)

1. 물품 : H.R.COIL
2. 수량 : 4,700M/T
3. 금액 : U\$KJL1,265,250
4. 원산지 : 일본

## 제 2 조(수입대행 절차 및 운용)

- ① 본 계약의 체결 후, “갑”은 “을”에게 수입대행 요청시 제1조에서 정한 물품에 대하여 “갑”과 공급선 간에 체결한 수입계약서 사본 및 신용장 개설용 OFFER 등 관련사항을 통보한다.
- ② “을”은 “갑”으로부터 본 조 ①항에서 정한 신용장 개설 요청 입수 후 공급선앞 신용장을 BANKER’S USANCE 90DAYS로 아래와 같이 개설하고, 비용은 “갑”이 지급한다.
  1. 2000년 7월 L/C OPEN 수량 및 금액 : 4,700M/T (U\$ 1,265,250)
  - ③ “을”은 신용장 개설 즉시 “갑”에게 동 사실을 통보하고, 신용장 사본을 제공한다.
  - ④ 물품의 한국도착시 “갑”은 “을”的 명의로 통관하며, 관세 · 부가세 · 보험료 · USANCE 이자 등의 모든 제반비용은 “갑”이 해당 거래업체에 지급하고 기타 “갑”的 명의로 처리가 가능한 해상운임, 통관비, 하역비, 국내운송비 등은 “갑”이 처리한다.
  - ⑤ 통관 후 “갑”은 “을”에게 물품인수증 및 물품보관증을 제공하며, “을”은 “갑”에게 본 계약 제3조에서 정한 금액 중 수입대행료 부분만을 세금계산서로 발행하고, “갑”을 위하여 “을”的 명의로 관공서나 기관에 제출한 각종 증빙자료에 의해 발생하는 제반책임은 “갑”的 부담으로 한다.
  - ⑥ 수입대행료의 환율은 통관일 환율로 정하고, 이에 대하여는 추후 환율변동이 있어도 정산하지 아니한다.
  - ⑦ “을”은 “갑”을 위하여 명의상 수입대행을 하며, “을”的 의무는 수입 신용장을 개설하는데 한정되고, “을”的 명의로 수입 통관 후 “갑”에게 인도된 제품에 대한 납기 및 품질 불량 등 제반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. 수입을 위한 확정 OFFER 등은 “갑”이 선정한 것으로서, 수량 부족 및 해외 SUPPLIER의 계약 위반, 기타(천재지변, 분쟁, 소요, 폭동, 노사분규 등)에 관한 책임은 “갑”이지고, 그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해서는 “을”에게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. 아울러, “갑”은 본 건 수입대행 계약에 의한 수입 물품의 인수를 거절할 수 없다.

### 제 3 조(적용 금액 계산)

- ① “을”이 발행할 세금계산서상 금액은 다음과 같이 통관일(수입면장적용환율) 당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.
- ② 세금 계산서 금액 = 수입대행료(U\$4/MT) × 환율(수입면장적용환율)
- ③ 본 계약에서 정한 “을”의 수입대행을 위하여 “갑”이 “을”에게 지급하는 수입대행료는 U\$4/MT을 기준으로 한다.
- ④ “갑”이 “을”에게 제공하는 타수어음의 만기는 “을”이 개설하는 수입 L/C USANCE기 한만기일 전일을 원칙으로 한다.

### 제 4 조(담보 및 대금결제)

- ① “갑”은 “을”에게 수입대행에 따른 담보용으로 수입물품대금의 110%에 해당하는 (주) ○○스틸 발행 당좌수표와 수입물품대금의 100%에 해당하는 타수어음을 신용장 개설 시점에 제공한다. 단, 계약서내용의 타수어음은 (주)○○가 발행하고 (주)○○스틸이 배서한 약속어음을 말한다.
- ② “갑”은 수입대금 결제를 현금으로 “을”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“갑”은 대금지급시 “을”의 명의로 “갑”이 기지급한 금액을 공제 후 차액을 지급한다.
- ④ 본 계약에 따른 환차손익은 “갑”에게 귀속되며, 수입대금은 결제당일 “을”의 결제환율로 한다.

### 제 5 조(계약해제 및 해지)

- ① “갑”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“을”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하등의 최고없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“을”은 본 건 수입물을 “갑”的 동의없이 처분하여 “을”이 부담한 자금 및 손해, 기타 부대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.
  1. “갑”이 본 계약에 정한 제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불이행하였을 경우
  2. “갑”이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압류, 가압류, 가처분 및 경매 등 기타 강제 집행신청 및 개시가 있었을 경우
  3. “갑”이 부도, 지급불능, 파산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
  4. “갑”이 발생, 배서, 인수나 보증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 처분되었을 경우
  5. 기타 사유로 인하여 “갑”的 신용이 현저히 저하되어 본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“을”이 판단한 경우
- ② 전 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이미 발생한 “을”的 권리 또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### 제 6 조(기한의 이익상실) 본 계약 제5조에 정한 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하였을 경우에 “갑”은 본 계약서상 “을”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, “을”은 최고 및 이행의 청구없이 “을”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

제 7 조(유효기간)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“갑”이 전체 채무를 “을” 앞으로 상환 만료시 까지 유효하다.

제 8 조(분쟁해결)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하되, 이의가 있을 경우 대한 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른다.

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“갑”을 쌍방이 기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○○년 ○월 ○일

(갑)

서울시 ○○구 ○○동 275번지

(주)○○스틸

대표이사 정 ○ ○ (인)

(을)

서울시 ○○구 ○○동 837-12

(주)○○

대표이사 이 ○ ○ (인)